



피킹작업자와 지게차 부딪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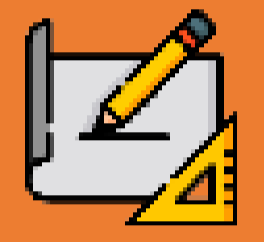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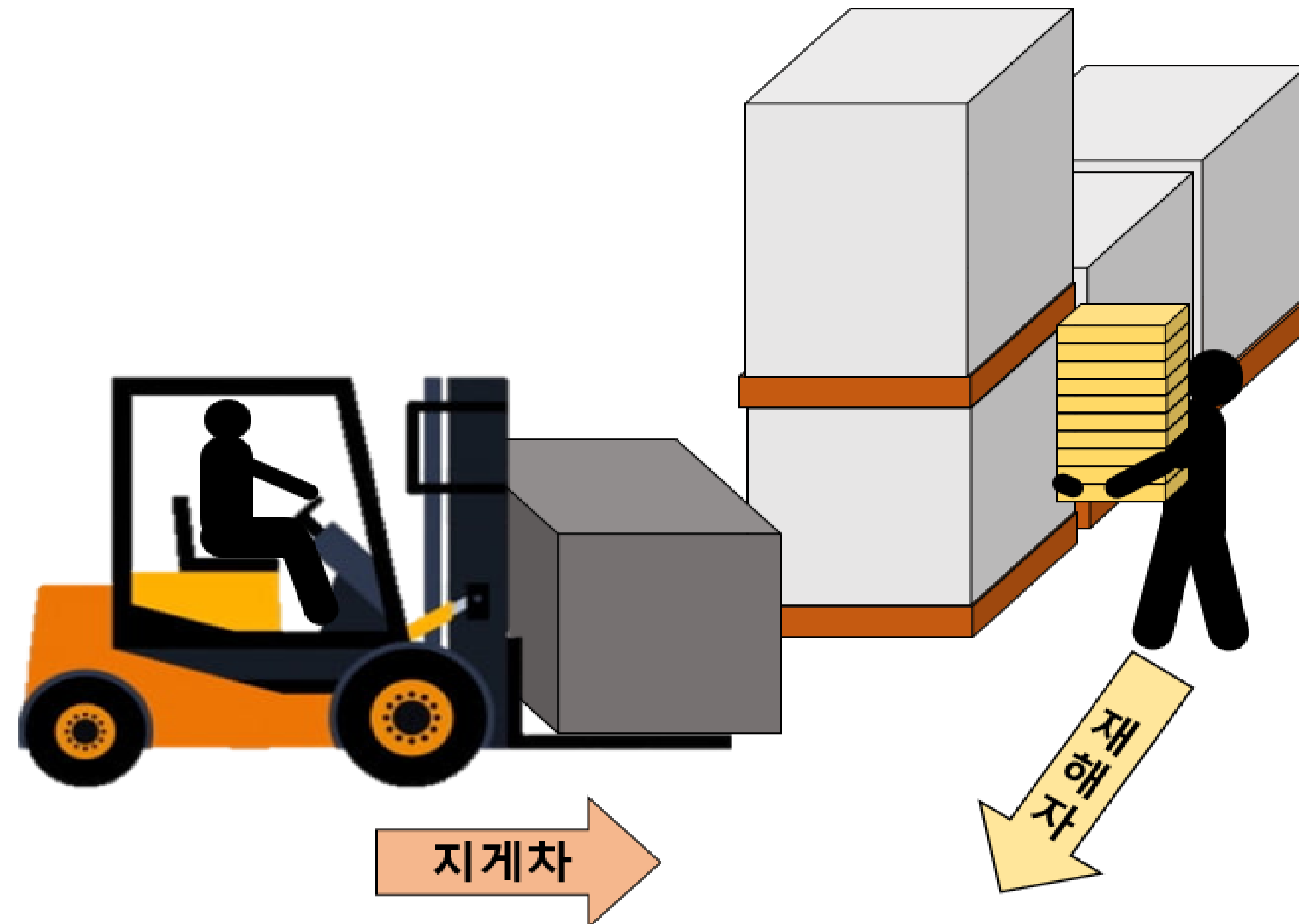
재해개요

2023. 04. 00.(일) 03:12경 인천광역시

서구 소재 물류센터 피킹장에서

재해자가 지시 박스를 들고 이동하던 중

지게차와 충돌하여 사망함



발생원인

- ▶ 근로자 보행 통로 사용 불가 - 통로 구획 상태 관리 미흡
 - 보행자 통로 구획 페인트 벗겨짐 등 보행자 통로를 구분할 수 없는(보행자 통로 미설치) 상태로, 피킹 작업자가 보행자 통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 방치
- ▶ 작업자 시야 미확보 - 수동 대차 미사용
 - 피킹 작업자가 지시 박스를 직접 들고 이동하여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로 이동
- ▶ 작업지휘자 미배치
 - 피킹장은 지게차와 작업자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장소로, 지게차 충돌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 미배치



예방대책

- 1 보행자 통로 구획 페인트 작업 실시 및 관리
 - 사업장 내 작업자가 보행 통로를 항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 구획 페인트 작업을 실시
 - 작업 주기 등을 정하여 통로 구획 페인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실시
- 2 보행 작업자 시야 확보에 대한 관리·감독
 - 피킹 작업자가 지시 박스를 지정 장소로 운반할 경우 수동 대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·감독
- 3 작업지휘자 배치
 - 사업장 내 보행자 통로와 지게차 경로가 교차되는 장소 등 지게차 충돌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작업 지휘자 등을 배치

※ 본 M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